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611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9. 3. 29.
4. 회부일자 : 2019. 4. 3.

II. 제안이유

-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예술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며,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술교육관련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1.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1항제6호).
2.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술교육센터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의2).

## 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[별첨3]
3. 협 의 : 감사관, 정책·안전기획관,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
4. 기 타
 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[별첨1]
  - 2) 입법예고(2019.2.21.~3.14.) : 의견 없음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611호로 제출되어 2019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교육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, 예술교육센터 설치·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 가.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검토(안 제11조제1항제6호)

- 현행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15조제1항에서는 “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”고 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 “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<sup>1)</sup>
-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교 밖 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을 통해 학교교과 수업 내용 및 방식을 다양화하고, 학교-지역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모델을 개발·보급하는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「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<sup>2)</sup>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1)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
제15조(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 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·전시·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2) 교육부 보도자료 :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(2018.11.9.)

-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「2019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, 서울학생 오케스트라 향연, 국악 배달통 사업 지원, 예술이음연구학교 운영,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, 학생예술 동아리 운영 등 지역연계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이와 같이 안 제11조제1항제6호는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**나. 예술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검토(안 제11조의2 신설)**

-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창의체험 공간 제공,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, 지역사회 문화예술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성을 위해 예술교육센터를 2014년부터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**[표1]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술교육센터 운영 현황**

구분	센터명	운영주체	2018 예산 2019 예산 (단위: 천원)	위치	규모
1센터 (2014. 7)	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	체육건강 문화예술과	1,648,393	(은평구) 은평문화예술 정보학교 내	연면적: 3,349m <sup>2</sup> (지상1~5층)
			1,630,068		
2센터 (2018. 4)	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	체육건강 문화예술과	1,214,141	(성동구) 서울동명 초등학교 내	연면적: 2,670m <sup>2</sup> (지하1층~지상4층)
			1,086,537		
3센터 (2018. 10)	구로청소년 문화예술센 터	남부교육 지원청	490,996	(구로구) 구로중 학교 내	연면적: 1,967m <sup>2</sup> (지상1~4층)
			641,197		

○ 안 제11조의2는 예술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예술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, 센터의 사업 범위, 예술교육센터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특히 같은 조 제4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거나,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

이는 교육감이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.<sup>3)</sup>

○ 이와 같은 자치사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<sup>4)</sup>, 위임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이와 함께 안 제11조의2제4항의 후단에서는 “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는 기 설치된 예술교육 센터의 “프로그램 운영”에 관한 사무가 이미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## [표2] 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위탁 운영 현황

구분	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(1센터)	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(2센터)	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(3센터)
운영 방식	절충형 (총괄: 교육청, 프로그램운영: 전문위탁기관)		

3)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(2018.10.개관) : 센터 운영주체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지정·운영되고 있음

4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위탁 기관	3사 공동수급	3사 공동수급	구로문화재단
프로 그램	샌드아트, 연극(연기), 사진으로 보는 세상, 단편영화 만들기, SNS기자단, 무대분장, 뮤지컬, 나만의 런웨이, 신나는 비보이 댄스, 뮤직 메이킹, K뮤지컬, 세계의 타악, 디지털드로잉 캐릭터디자인 등	살풀이 랩, 별별 벨소리, 업사이클링 악기, 하이브리드트랜스포머, 인공식물, 공동체 놀이, 커뮤니티 댄스, 연극놀이, 드로잉, 나르는 전단지 등	청소년관현악교실, 청소년댄스교실, 청소년뮤지컬창작교실, 청소년영상미디어교실, 세계시민 캠페인 댄스공연교실 등

○ 다만 안 제11조의2제5항에서 “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”고 규정하였는바,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센터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 관계 법령

## ■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
[시행 2017.3.21.] [법률 제14630호, 2017.3.21., 일부개정]

### 제15조(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·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·장비,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·장비, 문화예술교육사·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 제18조(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·전시·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